

울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0가단118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신강식, 박준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07. 6.경 부동산 투자를 하여 돈을 같이 벌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액면금 7,000만 원의 수표를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억 2,716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는 2018. 3. 19.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수입으로 취득하여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던 C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진정명의를 회복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수입으로 취득하였다거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대산

별지